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951

발의연월일: 2022. 8.22.

발 의 자: 박성민·金炳旭·김승수

김용판 · 노용호 · 이명수

이채익 · 이헌승 · 전주혜

하영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, 시·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(중앙대책본부장)에게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재난의 대응 및 수습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·도지사에게 도 재난사대의 선포 권한을 주어 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도 시·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6조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
제36조제1항 본문 중 "행정안전부장관은"을 "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
·도지사는"으로, "중앙위원회"를 "중앙위원회 또는 시·도위원회"로
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
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

"행정안전부장관은"을 "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"으로 한다.

③ 시・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제11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

한 재난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지역위원회) ① 지역별 재	제11조(지역위원회) ①
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	
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조정하	
기 위하여 특별시장・광역시장	
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	
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	
라 한다) 소속으로 시·도 안	
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·도위	
원회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	
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	
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	
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	
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•	
군수・구청장 소속으로 시・군	
•구 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시	
·군·구위원회"라 한다)를 둔	
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2.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
	의 선포에 관한 사항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6조(재난사태 선포) ① 행정안 제 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•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 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 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중앙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. 다만, 행정안전부장관 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 치지 아니하고 재난사태를 선 포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<신 설>

∥36조(재난사태 선포) ① <u>행정안</u>
전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
<u>중앙위원회</u>
또는 시·도위원회
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·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
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

③ 시·도지사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보고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포된 재난사태를

③ (생 략)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 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 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
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
도지사는